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8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31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24.

주 문

1.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27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8

가. 원고는 2016. 3. 24. [redacted]군으로부터 군유림에 있는 나무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유림 입목 매매계약서

제2조(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분	재적(㎥)	용도
1	B	낙엽송	3,078	원목
		소나무 외	701	펄프
2	C	낙엽송	974	원목
		소나무	556	원목, 펄프
3	D	낙엽송	1,415	원목
	합계		6,724	

제3조(대금납입)

군유 입목 매매대금은 317,880,000원으로 하며, 원고는 평창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매각시기 및 매각조건)

① 원고는 매각 계약 후 입목을 4개월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② 4개월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에 귀속된다. (단,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전에 평창군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군유벌채목 이전경비 및 책임)

① 군유림 입목 이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및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기존 임도 및 운반로 외에 임산물 운반로 등이 필요한 경우 원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신고절차를 사전에 득한 후 반출해야 하며, 반출로 인한 민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⑤ 원고는 반출 완료 후 운재로 전구간에 대하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복구(원칙적으로 되메우기 복구)하여야 하며, 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횡단배수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8

설치 등)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2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7. 원고에게 취득세 6,35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277,2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므로, 이 사건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입목'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8

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므로,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룬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로 되었다면 그 수목은 구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 82누5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의 제목이 "군유림 '입목' 매매계약서"인 사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도 '입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입목'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을 매각하는 유형으로는 ① 조경수로 굴취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8

여 매각하는 유형과 ② 원목 생산을 위하여 매각하는 유형이 있는데, 조경수로 매각하는 경우와 달리 원목 생산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목의 '뿌리' 부분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피고도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 취득의 경우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뿌리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답변서)].

나) ① 원고가 '원목'을 생산·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낙엽송, 소나무 등)의 용도가 조경수가 아닌 '원목, 펄프'인 점, ③ 이 사건 계약 제5조의 표제가 "군유'벌채'목 이전경비 및 책임"인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 후 목적물을 4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목을 벌채한 원목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의 상대방인 평창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목 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목을 벌채한 원목을 반출할 권리만을 가질 뿐, 이를 넘어 임목의 뿌리까지 반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뿌리를 제외한 임목'에 한정된다.

라) 나아가 이처럼 뿌리를 제외한 임목을 가리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구 지방세법 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8

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는 0원이 된다.

또한,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12. 1. 대통령령 제2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7호를 추가함으로써, 원목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입목의 취득과 같은 형식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현행 관계 규정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류하나

판사 문지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8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

■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 1천분의 20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8

■ 지방세법 시행령

○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제4조(비과세)

③ 법 제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제57조의2 제2항·제6항, 제66조 제1항·제2항, 제68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끝)